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-133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2년 12월 1일

제안자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수정함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7년 12월 31일까지”에서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로 수정함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 
한다”를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	수   정   안
제2조의2(기금의 존속 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의2(기금의 존속 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<u>제2조의2(기금의 존속 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